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노인복지법 중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작업의 조속한 완수 및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중 개정안을 8월 31일 입안하여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0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작년 제184회 임시국회(1997년 7월 31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바 있다.

### □ 노인복지법 중 개정(안) 주요내용

-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안 제9조 제1항).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입주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의 2).

-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함(안 제35조 제6항).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신고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 제5항).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함(안 제46조).
- 가정봉사원교육훈련기관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 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한 과잉규제 규정을 폐지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으로 약칭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1998년 9월 현재 전국에는 3,177명의 『공중보건 의사』와 2,010명의 『보건진료원』이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주민진료와 질병예방 활동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의사』는 병역법(兵役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시·도에 배치하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서 매년 4월 중 근무인원의 약 1/3인 1천여 명이 교체되고 있다. 또한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개월간의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시장·군수가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무의촌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원은 배치지역 안에서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

-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한 과잉규제의 폐지

- 현행 규정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중 농특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특법상 의무위반 사항만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은 과잉처벌에 해당하고, 의사로서의 의무위반사항은 의료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함으로 이를 삭제함.
- 현행 규정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근무지역 안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원』은 의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순수 공무원신분이며,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와 같은 거주지 제한 규정은 과잉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련 규정의 보완

-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자인 동시에 복무기간 중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복무하는 이중적 신분으로서, 현행 규정에서는 의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가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음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종전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전 1주일의 직무교육기간을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였으나, 이 경우 신규임용자와 복무만료자 교체시 전국 약 1천개소의 보건지소 등에서 1주일간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법 무관(公益法務官)의 예와 같이 임용전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여 선·후 임자간에 직접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자임과 동시에 복무기간 중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복무 중인 이중적 신분이므로, 복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된 경우 등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에도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형편이므

로 이와 같은 경우 군인사법(軍人事法)의 규정 예와 같이 휴직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 및 직장을 이탈하거나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일률적으로 위반일수 5배수의 기간 복무연장을 명령토록 하고 있으나, 위반내용의 경중에 불문한 획일적인 처분은 때로는 과잉처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5 배수 기간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차등을 두어 정하도록 함.
- 현행 규정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로 직무교육에 불응한 때와 통상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등을 추가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중 수련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적기에 전공의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자질향상과 의료취약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폐지

-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당초 설치 목적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그 기구설치의 규정을 폐지함.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등 개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과 1998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1998년 9월 30일자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요양기관 관리규정』 및 『의료보호의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등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내용

- 진료권 제한 제도의 폐지
  -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중진료권 외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였으나, 10월 1일부터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됨. 그러나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의료전달체계’는 그대로 지속됨.
-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제도 폐지
  - 지금까지는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는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10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료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체납에 따른 가산금 제도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의 제도는 그대로 지속됨.

##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의 필수조건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 출자하여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의약품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제조→보관→운송→판매’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의료보험의약품의 가격 결정방법을 실거래가격에 자동 연계되도록 하고, 약품대금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불법 뒷거래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